

#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제 94 회 사 천 시 의 회 임 시 회  
제1차산업건설위원회(2005. 3. 24)

## 1. 심사 경과

- 가. 2005. 3. 3 : 사천시시장제출
- 나. 2005. 3. 18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8호)
- 다. 2005. 3. 24 :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(도시건축과장 박경진)

### 가. 제안 이유

「주택건설촉진법」이 폐지되고 「주택법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농어촌주택사업 관련 조항 삭제
- 2) 인용 법령명칭 및 용어 정비
  - 주택건설촉진법 ⇒ 주택법
  - 한국주택은행 ⇒ 국민은행
- 3) 현행 국민주택 용자제도가 은행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, 우리시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사업이 없어 이와 관련된 조항 정비

### 다. 관계 법령

- 「주택법」, 「주택법시행령」

## 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이 2003. 5. 29 「주택법」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것임.

○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

-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89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원리금을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상환하던 것을
- 1990년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직접융자해 주고 원리금도 직접 회수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자금의 융자와 회수를 위한 규정이 불필요한 실정인 바 본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
-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「주택법」으로 하고 「한국주택은행」을 「국민은행」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은행의 통폐합으로 인한 관련기관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임
- 본 조례를 계속존치 하는 이유는 1989년도 까지 융자해준 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므로 융자금이 전액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상환완료 될 때까지는 존치가 필요함.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고 조례의 구성 및 체계, 자구의 사용 등 현 규정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있어 특별한 문제점 없음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